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60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724,932원 및 그 중 27,917,878원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8.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1. 접수 제824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34,000,000원, 보증기한 2023. 2. 20.까지로 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가 2020. 8. 21.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0. 13. 중소기업은행에 29,356,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대위변제금 중 1,438,797원을 회수하였고, 34,056원의 손해금 및 772,998원의 법적절차비용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는 2021. 8. 10.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신용보증약정에서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한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 28,724,932원(=29,356,675원 - 1,438,797원 + 34,056원 + 772,998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27,917,8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0. 13.부터 2020. 12. 31.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6.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인낙).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1.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3.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될 무렵 원고가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 A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다 사인에 대한 채무를 월등히 많이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 A에 대하여 가장 큰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 B 또한 자신의 정확한 채권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 A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서야 피고 A에게 5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8. 기준 가액은 380,000,000원 상당인 반면,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C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20. 8.경 개인회생 신청 무렵 및 2020. 11.경 신용회복지원 신청 무렵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8,488,776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3,545,805원, F 주식회사에 대하여 8,229,392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6,791,582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8,460,267원, 주식회사 I에 대한 3,053,209원 합계 97,293,963원 및 개인채권자들(J, K, L)에 대하여 합계 147,943,80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외에도 배우자 M와 피고 A가 2021. 5. 26.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5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마쳐주는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별지